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칙

전문개정 2021년 05월 21일

전문

우리 인문대학은 자유, 평등, 정의, 진리, 인류애의 이념아래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학문연구와 사회참여로 사회 정의와 진리탐구에 정진해왔으며 그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왔다.

이에 인문대학 학생은 진리로 향한 학문탐구와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와, 인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인문학도의 양성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현실 사회문제의 극복과 자유로운 학문탐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인문대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모아 인문대학 학생회칙을 2021년 05월 21일에 전문개정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회원의 창조적 인문학 탐구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학풍과 대학문화를 건설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양함으로써 사회발전과 진보적인 대중문화의 창달, 회원의 복지와 편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 본회는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내에 둔다.

제4조(권력) : 인문대학 학생의 주권은 인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회원'으로 한다)에 있고 그 권력은 인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제5조(학교당국과의 협의) : 본회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당국의 제반회의에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 학생회간부, 대의원장 등 학생대표자가 참석하며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 ①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② 회원의 권익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③ 학생신분 및 본회활동에 관한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 ④ 인문대학 내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
- ⑤ 인문대학 이동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⑥ 인문대학 기성회계 예·결산에 관한 사항
- ⑦ 인문대학의 특성화 또는 장단기 발전에 관한 사항
- ⑧ 회원다수의 요구에 의한 사항
- ⑨ 기타 본회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6조(평의회) : 인문대학의 구성간의 소통과 사업전반에 관한 회원의 요구 실현을 위하여 출

남대학교 학칙 제4절 11조에 의거하여 인문대학 평의회를 구성한다. 평의회의 제반사항은 인문대학 평의회 회칙을 따른다.

제7조(교육과 학문) : 회원은 교육과 학문의 권리를 가지며 본회는 그 자주성·전문성·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8조(정보공개) :

1. 본회의 모든 자치기구는 운영, 활동, 자료 등 중요한 정보를 정리 및 보관하여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모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

-감사, 감독, 계약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그 밖에 공개될 경우 본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

2. 본회 및 각 자치기구의 장은 차기 인문대학 학생회장 및 각 자치기구의 장에게 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인계인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2장 회원

제9조(자격) : 본회의 회원은 대학원생을 제외한 인문대학의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① 제1학기 재학생 : 03월 01일부터 08월 31일까지

② 제2학기 재학생 : 09월 0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10조(권리)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회원은 본회의 주체가 되며 제반활동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 및 예하 자치기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 및 예하 자치기구의 활동과 관련된 의사 결정시 언제든지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④ 회원은 본회의 사업계획, 재정, 그 밖에 운영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⑤ 본회의 회원은 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율성에 반하는 부당한 침해가 있을시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의 권리를 가진다.

⑦ 본회는 회원의 권익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시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⑧ 본회의 회원은 자율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권리를 가진다.

⑨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11조(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본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총회

제12조(직위) :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3조(구성) :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전체로 구성한다.

제14조(의장) :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시에는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소추시에는 대의원장이 임시의장이 된다.

제15조(권한) :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가 관련된 중대 사항을 토론하고 의결한다.

제16조(소집) :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을시 의장이 소집한다.

- ① 회원 200인 이상의 요구시
- ②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요구시
- ③ 대의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요구시
- ④ 학생회장의 직권 사용시(단 이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만 적용한다.)

제17조(공고) : 학생총회는 목적을 명시하고 3일 이전에 공지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생회장이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 학생총회 의결은 회원 1/10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4장 인문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제19조(지위) : 인문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의 수임기구이다.

제20조(구성) : 인문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인문대학 학생회 운영위원, 인문대학 대의원회 의장·부의장, 인문대학 소속 각 학과 학생회장·부학생회장, 학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의장) : 인문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맡고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단, 인문대학 학생회장 유고시는 인문대학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제22조(업무 및 권한)

- ① 인문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존립 및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의결한다.
- ② 인문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의 기구와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23조(소집) 인문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인문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은 목적을 명시하고 3일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소집 할 수 있다.

- ① 인문대학 학생회장의 소집 요구 시
- ② 인문대학 정회원 1/3이상의 연서 요구 시

제24조(의결) 인문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은 인문대학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제25조(지위) : 운영위원회는 인문대학 학생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26조(명칭) : 운영위원회는 '인문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라 칭한다.

제27조(의장) :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28조(구성) : 단운위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단 학과 학생회장의 불참시 학과 부학생회장의 참석도 인정한다.

제29조(출석) : 단운위는 의장 직권으로 특별기구장, 집행부, 대의원회, 동아리집행부 등의 출

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결권이 아닌 발언권만 지닌다.

제30조(회의) : 단운위는 학기 중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항상 보관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업무) : 단운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① 학생회 사업계획
- ② 예산 및 결산안
- ③ 회칙 개정 발의
- ④ 대의원회 요구 사항
-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32조(의결) : 단운위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제외한 각 학과 대표는 2인 이상이 참여하여도 1표로 계산한다.

제6장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제33조(지위) :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34조(역할) : 학생회장은 본회의 제반 활동을 총괄하며 본회와 관련된 사항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35조(임기) :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36조(신분보장) :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부당하게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7조(권한) :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① 학생회장은 본회의 대표업무 및 운영을 총괄 한다.
-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학생회장은 집행부의 각 국장 및 차장, 수습간부, 특별기구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인문대학 평의회 위원자격을 가진다.

제38조(의무) :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① 학생회장은 회원의 권리를 수호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 ② 학생회장은 회원의 요구에 부합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 ③ 학생회장은 본회를 수호하며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④ 학생회장은 회원의 요구에 응해 대학 당국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의무를 지닌다.

제39조(권한대행) : 다음과 같을시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① 학생회장의 유고시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집행부 각 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학생회장의 휴학 및 졸업은 유고로 보지 아니한다.
- ② 학생회장 탄핵의결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학과 학생회장중 1인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40조(비상대책위원회) : 비상대책위원회는 단과대학 운영위원중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으로 구성되며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와 동일한 위상을 가진다.

제7장 학생회

제41조(기구) :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 ① 기획국 :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 ② 사무국 : 각종 사업의 제반 사무업무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을 담당한다.
- ③ 홍보국 : 각종 사업의 제반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 ④ 연대사업국 : 각종 사회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 ⑤ 체육국 : 체육활동에 관련한 사업을 담당한다.
- ⑥ 복지국 : 회원의 제반 복지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⑦ 기타 학생회활동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 및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각 부서의 장) : 각 부서의 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43조(구성) : 각 부서의 설치, 구성, 직무범위, 역할은 학생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기능) : 각 부서는 학생총회 및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총괄하에 해당 사업을 집행한다.

제8장 특별 기구

제45조(목적) : 특별 기구는 학생회 집행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학생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46조(설치) :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등의 특별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7조(특별기구의 장) : 특별기구의 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며 예하의 집행간부를 임명할 수 있다.

제48조(직무) : 특별기구의 설치, 구성과 직무범위는 학생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학생회장의 총괄하에 둔다.

제9장 대의원회

제49조(지위) :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 감사·자문기구이다.

제50조(구성) : 대의원회는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각 학과에서 원칙상 1인을 선출하고 선출규정은 각 학과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의무) :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① 대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회원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의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은 외부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할 수 없다.

제52조(제한) : 대의원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위원, 학생회 집행간부, 특별기구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3조(기구) : 대의원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과 의장이 임명한 감사국장, 사무국장, 서기

등의 집행간부를 둘 수 있으며 집행간부들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직무) :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의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이를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선출) :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같이 입후보하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 및 인문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6조(임기) :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당 해 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1년으로 한다.

제57조(궐위) : 대의원의 궐위 시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장 궐위 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부의장 궐위 시 대의원 중 1인을 의장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 궐위 시 보궐선거 또는 대의원회에서 간선한다.
- ④ 학과 대의원 궐위 시 해당 학과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역할) : 대의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칙개정 발의 및 의결
- ②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서의 심의 및 의결
- ③ 회계, 서무 및 기타업무에 관한 감사
- ④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승인
- ⑤ 집행부 인준
- ⑥ 정·부학생회장의 탄핵
- ⑦ 학생회비 납부 및 수익사업, 학과 학생회의 선거 공약에 관한 감사, 심의, 의결, 승인
- ⑧ 정·부학생회장 및 학생회 집행부, 학과 정·부학생회장 및 집행부 출석 요구
- ⑨ 집행부의 해임 의결
- ⑩ 인문대 학생회 및 산하 자치기구에 대한 선거관리권

제59조(감사) : 대의원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회, 학과, 대의원회 등을 감사할 수 있다.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대의원회 감사시행세칙 및 인문대학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제60조(선거관리) : 대의원은 인문대학 학생자치기구의 선거관리권을 가지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과 인문대학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61조(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임기 중 1회 이상 소집한다.

제62조(임시총회) : 다음과 같을시 대의원회 의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대의원의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 ③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또는 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시

제63조(최초회의) : 회기의 최초회의는 전임 의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64조(의결) :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부학생회장의 탄핵의 경우 재적대의원 2/3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가부동수) : 대의원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10장 학과 학생회

제66조(지위) :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67조(구성) :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 학생 전체로 한다.

제68조(회장) : 학과 학생회장은 각 학과 학생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단운위의 운영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69조(학생회칙) : 각 학과 학생회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으며 본 회칙과의 충돌 시 각 학과의 회칙을 우선시 한다.

제70조(자격) : 인문대학 12개학과(고고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사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언어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한문학과)를 자격으로 하며 인원수에 상관없이 각 학과별로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11장 동아리

제71조(목적) : 회원의 편익과 취미함양 및 학술증진을 위하여 동아리를 설립한다.

제72조(설치) : 동아리는 충남대학교 인문대학내 해당 동아리방에 둔다.

제73조(자격) : 인문대학내 공식 동아리는 APEX(야구), 백두산(축구), 오만볼트(농구), 광장(학술)으로 하며 비공식동아리는 회원이 자유롭게 설치 및 해산할 수 있다.

제74조(회칙) : 각 동아리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다.

제75조(동아리방) : 각 동아리방은 인문대학 111호, 112호, 114호, 115호로 하며 사용에 관하여는 공식동아리가 우선권을 가진다. 단 비공식동아리가 동아리방 사용을 원할 경우 해당 공식 동아리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제12장 예산운용

1절 운용

제76조(목적) : 이 장은 본회 및 산하자치기구의 예산운용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7조(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8조(재원) :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예산으로 운영한다.

- ① 학생회비
- ② 기성회계 학생지원금
- ③ 수익사업이익금
- ④ 각종행사의 격려금 및 후원금
- ⑤ 각 행사별 회원이 납부한 회비
- ⑥ 전년도 이월금
- ⑦ 기타 자체조달경비

제79조(사용) : 본회의 경비는 본회 활동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0조(공개) : 본회의 예산에 관한 운용 및 결산사항, 감사 자료를 회원 또는 대의원회가 원할 경우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1조(계좌) : 본회의 예산과 관련한 계좌는 하나의 계좌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의원회의 요청 시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카드비밀번호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업무추진비) : 본회는 업무의 능동적인 집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두고 이는 총액의 15%로 정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규정한다. 단 이는 각 학과 학생회의 예산운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학생회 간부 및 단과대학 운영위원의 회식비
- ② 집행부의 LT비용
- ③ 기타 업무추진비용

제83조(수익사업) : 대의원회를 제외한 본회 및 산하자치기구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대의원회운용비) : 대의원회 운용비는 총대의원회 또는 인문대학 학생회장, 인문대학 대의원장의 합의 하에 결정된다.

제85조(문서보존) : 회계장부 및 영수증 등 감사자료의 문서보존 기한은 3년으로 하며 이는 대의원회에서 보관한다.

제86조(학과학생회비) : 학과학생회비 납부는 일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항의 경우 각 학과의 특성에 따른다.

제87조(학과학생회비 반환) : 전과, 중퇴, 제적 등 회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이 학과 학생회비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다. 학과 학생회비 반환은 한 학기 단위로 반환해야한다. 단, 이 경우 재적증명서를 확인한 후 반환이 가능하다.

2절 감사

제88조(목적) : 본회 및 산하자치기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9조(대상) : 본회 및 산하자치기구, 대의원회가 피감사 주체로서 대의원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90조(감사시행) : 자세한 사항은 인문대학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3장 선거

제91조(목적) : 본 장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선거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2조(원칙) :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93조(선거 시기) : 선거는 임기 개시 전년도에 11월 중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4조(선거운동자격) : 회원이 아닌 자와 당 해 년도 학생회 임원, 대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선거운동원 등록 마감일 전까지 사퇴 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제95조(유권자) : 유권자는 본회의 회원(재학생)으로 하며 휴학생 및 졸업생, 대학원생은 유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96조(선거관리위원회) :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는 대의원회 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은 대의원회 의장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9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 ② 선거인 명부 작성
- ③ 선거일정 공고
- ④ 투표구 지정
- ⑤ 투표용지 및 투표함 제작
- ⑥ 벽보 및 홍보물 제작
- ⑦ 공개연설 및 정책토론회 개최
- ⑧ 선거운동의 감독
- ⑨ 불법선거운동의 조사 및 심의
- ⑩ 불법선거운동의 처벌
- ⑪ 각 후보 진영의 자료제출 및 책임자 출석요구
- ⑫ 개표 및 당선 확정 공고
- ⑬ 투표구 및 개표장의 질서유지 및 감독
- ⑭ 선거비용의 심의 및 의결
- ⑮ 각 후보 진영의 의견조율
- ⑯ 기타 선거제반에 관련한 사항

제1절 정·부학생회장

제98조(피선거자) : 정·부학생회장은 동시에 입후보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회원인 자로 인문대학에 재학중인 자
- ② 품행이 단정하고 심신이 건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③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④ 학생회비를 납부한자
- ⑤ 정·부학생회장, 학생회 집행부 및 특별기구장, 각 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대의원, 동아리 정·부회장은 원서등록 마감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99조(시기) : 임기년의 전년도 11월중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시 연장 할 수 있다.

제100조(입후보) : 정·부학생회장은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며 각 학과의 추천자는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1조(투표) : 투표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선거는 지정된 투표 장소에서 지정된 투표용지 및 투표용구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 ② 회원은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기록부, 통합정보시스템 등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에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투표한다.
- ③ 투표는 09시에 시작하여 18시에 종료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투표를 중단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02조(개표) :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 측과 합의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투표종료 3시간 이내에 개표하여야 한다.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참관인을 반드시 입회한다.

제103조(무효표)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효표로 한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투표용지나 기표도구가 아닌 경우
- ② 복수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 ③ 기표하지 아니한 경우
- ④ 후보자 간의 분리선에 기표한 경우
- ⑤ 기표용지의 옆선을 벗어나 투표한 경우
- ⑥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경우

제104조(당선) : 다음과 같을시 당선을 확정한다.

- ① 전체유권자의 과반수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수위 득표자 간 표 차가 무효투표수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득표순위 1·2위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② 단독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재적인원 1/3(33.3) 이상의 투표에 유효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105조(당선공고) :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 후 48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단 경고누적 등의 이유로 공고 후 1주일 이내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6조(보궐선거) : 당선무효, 후보자 미등록, 후보자 자격미달 등의 사태로 인하여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임기 전년도 11월중 또는 내년 3월중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절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제107조(피선거자) : 의장과 부의장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회원인 자로 인문대학에 재학중인 자
- ② 품행이 방정하고 정의로운 자
- ③ 정·부학생회장, 학생회 집행부 및 특별기구장, 각 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원서등록 마감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108조(시기) : 임기년의 전년도 11월중으로 한다.

제109조(대의원회 투표) :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후보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진행한다.

제110조(직위) : 의장 및 부의장에 당선된 자는 학과 대의원을 겸직하며 한 개의 학과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동시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111조(시행세칙) :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충남대학교 통합학생회칙을 따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절 비상대책위원회

제112조(목적) : 학생자치기구장 미선출 또는 탄핵 시,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복지와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한다.

제113조(구성) : 회원 중 최소 3인 이상의 위원과 1인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4조(위원장) :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에 따라 선출된다.

- ① 학생자치기구장 미선출 시, 전임 학생회장이 지명한다.
- ② 학생자치기구장 탄핵 의결 시, 학생총회를 통해 호선한다. 이 때 학생총회의 성립은 제3장 제13조에 따른다.

제115조(역할) :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의 역할과 권한을 대행한다. 단, 학생회비 운용 시 본 회칙 12장을 따른다.
- ② 학생회비 계좌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되, 예산 운용 시 대의원장 혹은 해당 학과 및 학부

대의원의 관할 하에 집행한다.

③ 학생회비 집행,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인문대학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감사를 받는다.

④ 차기 자치기구가 출범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16조(임기) : 차기 자치기구 성립 시까지로 한다.

제14장 탄핵 및 해임

제117조(목적) : 본회 및 산하자치기구의 집행부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회칙에 위배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8조(탄핵대상) :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과 정·부학생회장 을 대상으로 한다. 단 각 학과 정·부학생회장은 각 학과의 회칙을 따르며 각 학과회칙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본 회칙을 따른다.

제119조(해임대상) : 학생회 집행부 및 특별기구 임원

제120조(시한) : 탄핵발의부터 판결까지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1조(발의) : 대상자의 회칙위배 및 법적·도덕적 문제가 있을시 다음의 요구로 발의한다.

- ① 회원 1/4 이상의 요구 시
- ② 운영위원의 3인 이상의 요구 시
- ③ 대의원 3인 이상의 요구 시
- ④ 대의원의 요구 시

제122조(권한정지) : 탄핵 및 해임의 발의를 받은 자는 판결이 있을 때 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제123조(권한대행) : 학생회장의 권한 대행은 본 회칙 제5장 32조 ②항을 따른다. 단 학생총회 시는 본 회칙 제3장 14조를 따른다. 부학생회장 탄핵 및 집행부 해임의 경우 학생회장의 재량에 의한다.

제124조(의결) : 의결은 본 회칙 8장 57조에 의해 재적대의원 2/3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125조(징계) : 대의원회는 탄핵과 관련하여 대학당국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고 법적문제가 발생 시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제15장 회칙개정

제126조(발의) : 본회의 회칙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장의 발의
- ② 대의원회 의장 발의
- ③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
- ④ 대의원 3인 이상의 발의
- ⑤ 운영위원회의 1/2이상의 발의

제127조(공고) : 발의된 학생회칙은 대의원회 의장이 즉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8조(의결) :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의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9조(시한) : 대의원회는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 후 48시간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130조(발효) : 개정 의결된 회칙은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 :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 본 회칙은 소급 적용치 아니한다.

제3조(개정) : 2021년 05월 21일 전면 개정